

목포 석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
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도

지구단위계획구역

가구 및 획지경계선

▲

차량출입허용구간

×

차량출입불허구간

A1

가구 및 획지번호

■

제1종일반주거지역

■

제2종일반주거지역(공동주택)

■

준주거지역(시 장)

■

녹 지

■

주 차 장

□

기타 도시계획시설

건축물 용도	
용적률	최고층수
건폐율	최저층수

변경 및 신설 부분에 한하여 유효함

구 분	작성 회사	작성 공무원	확인 공무원
소 속	(주)명신기업	목 포 시	목 포 시
직 위	이 사	도시계획담당	도시계획과장
직 명	고급기술자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사무관
성 명	문 영 진	송 창 현	오 병 주
확인인			

